

다자녀가정 할인 제도특별약관

제1조 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
이 특별약관은 2012년 9월 1일 이후 '다자녀가정 할인' 이 부가된 상품을 가입한 계약 중 유효한 계약(이하 '대상계약' 이라 합니다)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(이하 '특별약관' 은 '특약' 이라 합니다)

제2조 (제출서류)

계약자는 이 특약에 따라 '다자녀가정 할인' 을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.

단,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·자매가 당사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,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제3조 (보험료 할인의 적용)

- ① 회사는 대상계약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'다자녀가정 할인' 을 적용하여 드리며, 할인 금액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릅니다.
- ② 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'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(다자녀가정 할인)' 에도 불구하고, 대상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'다자녀가정 할인' 을 적용합니다.
 1. 가입시 신청 :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.
 2. 가입후 신청 : 관련된 증빙서류가 접수된 경우, 다자녀가정 할인요건 충족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.

제4조 (준용규정)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